

의안번호	2212108
의 퇴 인	강승규의원
회 답 일	2025.12.30.
추계번호	25B4377

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	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하천 정비·준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	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의 하천 정비·준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관할 구역 내 하천의 위험도·유량·퇴적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6조제3항(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)	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이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·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7조(정기적 준설의무)	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하천 준설 계획을 수립하고,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정비·준설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천 정비·준설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천 정비·준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		
3	안 제6조제3항(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)		
4	안 제7조(정기적 준설의무)		
5	안 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)		

2. 상세 사유

□ 하천 정비·준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의 하천 정비·준설¹⁾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며, 하천관리청²⁾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의 하천 정비·준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
- (하천 정비·준설 기본계획)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 「하천법」 제25조³⁾에 따라 하천의 준설 등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이와 함께 제정안에 따른 하천 정비·준설 기본계획(5년 단위)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하천 정비·준설 기본계획에 대한 3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는 별도의 연구용역을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하천 정비”란 하천의 범람과 이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고, 하천의 유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의 형태 및 기능을 개선하는 공사 또는 조치를 말한다.
2. “하천 준설”이란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사·부유물, 하천의 흐름에 방해되는 나무·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하천의 흐름과 수위를 안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“하천관리청”이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정비·준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환경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

3) 「하천법」 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·이수·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, 주민친화적 활용, 자연친화적 관리·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

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하천기본계획의 목표
2. 하천의 개황(概況)에 관한 사항
3.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
4.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
5.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
6.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·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
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⑧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통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적용되는 연구용역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, 해당 단가에는 하천 정비·준설 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단가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**(하천 정비·준설 시행계획)** 제정안에 따라 3년 단위로 하천 정비·준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하천 정비·준설 시행계획에 필요한 연구용역 비용은 각 하천의 위험도, 유량, 퇴적물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당 정보들을 특정할 수 없고, 제정안에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(안 제6조)

-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정비대상하천⁴⁾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하천관리청이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·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
 - － 현재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⁵⁾, 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·점검 및 관리하고 있음⁶⁾

4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우선정비대상하천”이란 폭우·홍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, 반복적 침수피해가 발생한 구간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의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하천 구간을 말한다.

5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,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를 거쳐(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6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3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제1항

[표 1]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관련 예산 및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코드명)	내역사업	주요내용	2024	2025	2026
재해위험지역정비 (보조) (2653-300)	재해위험 지구정비	침수·유실·해일·고립 위험 등으로 발생할 각종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, 제방 설치 및 관로개선 등 체계적 개선·정비	484,578	522,282	606,366
재해위험지역정비 (세종) (2638-302)			6,993	6,118	5,8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제정안이 시행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·준설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우선정비대상하천의 규모 및 하천의 정비·준설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제정안에서는 우선정비대상하천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제정안에 따라 지정될 우선정비대상하천과 하천 정비·준설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, 지원의 수준 또한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정기적 준설의무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하여 정기적 하천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정비를 시행할 경우, 정기적 하천준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정기 점검 및 전면정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정기적 하천준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규모는 하천별 위험도, 유량 및 퇴적물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해당

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(이하 “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·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
2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
3.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·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사항들을 특정하기 어렵고, 정기 점검의 방법·범위 및 전면정비의 대상과 정비의 필요 수준 또한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국가의 하천 정비·준설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하천 정비·준설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, 예산의 범위에서 하천 정비·준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하천 정비·준설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하천 정비·준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, 지원의 규모 또한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